



제418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 디지털 전환 시책에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6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u><신설></u> 9. ~ 10.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u>8의2.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u>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시책 마련을 추진하여야 함.¹⁾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종합계획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2023년 1월)에 따르면,

산업-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I 비전공 인력(대학생·구직자·재직자)을 대상으로 현장 문제해결형 실습을 병행하는 단기 대학원 필수과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보안·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산업-AI 마이크로디그리)을 마련하여 산업 현장에 신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³⁾,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디지털 전문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연봉의 50%를 지원하는 등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전환 및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D)⁴⁾을 통해 2024년부터 ‘산업 인공지능 제조혁신 전문인력양성’을 시작하여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등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근로자에게 충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안정 방안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고용안정 방안 강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3) 2023년 7월 카이스트와 한국공대에 ‘산업 인공지능(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신설하여 누구나 AI를 활용한 산업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프로젝트, 분야별 전문가 특강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자에게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지원함.

4)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사업으로 '24년도 예산은 1,574억 7,900억원이며 총 66개과제, 4,266명을 양성하고자 함. 이 중 ‘산업 인공지능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12억원이며, 18명 양성을 목표로 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려는 취지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고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24.4.25.시행)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⁵⁾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산업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지역,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⁶⁾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반영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종합계획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⁷⁾, 동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⁸⁾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1

7)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